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52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2. 16 선고 2022나1577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5276 판결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A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변론 종결2022. 6. 23.

판결 선고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6.에 한 재산분할 합의를

200,078,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78,9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의료법 등 위반행위 및 관련 형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부담이득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C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4. 10. 27. 사단법인 D 명의로 'E의원'을 개설하여 2014. 12. 3.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208,936,1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2010. 10. 1. 사단법인 D 명의로 개설한 'F의원'을 불법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2. 2. 2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1,244,742,5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의료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2017. 12. 8.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49, 371(병합), 379(병합), 413(병합), 433(병합)].

3)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7. 공소장 변경으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9(분리), 2018노969(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C은 2017. 3. 20. 피고와 협의이혼하였고, 2017. 3. 21.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7. 5. 25.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경정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재산분할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이혼한 배우자인 피고는 악의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200,078,95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200,078,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나)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참조).

2)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C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2. 2. 23.경부터 2015. 5. 20.경까지 합계 1,453,678,6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이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C이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발생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원고는 2021. 1. 12.을 기준으로 C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연체금이 1,791,636,06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일인 2017. 3. 21.을 기준으로 한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참조).

한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 쌍방의 재산과 액수를 정한 다음,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하고,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실제 재산분할의 결과 배우자가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주)G의 감정평가회보, (주)H의 감정평가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우선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피고와 C이 혼인생활 중 형성한 전체 재산의 내역과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하여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의 재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② 피고와 C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피고와 C이 혼인생활 중 형성한 전체 재산의 내역과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아래 표와 같다(2022.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1	목포시 I 대 366㎡	C	501,924,300	1	K조합 대출	70,000,000
2	목포시 I 건물					
3	목포시 I에 있는 J동 건물					
4	신안군 L 대 595㎡	46,588,800				
5	신안군 M 대 99㎡					
6	신안군 N 대 2,088㎡2) 원고는 위 대지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포함하여 기재한다.					
7	신안군 N 건물					
8	신안군 O 도로 4㎡					
9	목포시 P아파트 Q호	피고	86,000,000			
10	목포시 P아파트 R호	86,000,000				

피고는 위 표 중 피고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 1채 및 그 가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부채에 관하여 위 표 자산 순번 2 기재 건물에 관한 30,000,000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위 표 자산 순번 3 기재 건물에 관한 10,00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은 당시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이 혼인생활 중 형성한 전체 재산의 내역과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③ 설령 피고와 C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 재산은 610,513,100원[자산(501,924,300원 + 46,588,800원 + 86,000,000원 + 86,000,000원) - 부채(70,000,000원 + 30,000,000원 + 10,000,00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와 관련한 채무(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000,000원과 위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는 위 순 재산의 약 78%인 477,924,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았다 할 수

있다.

④ 이때 피고와 C 사이에 적절한 재산분할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C의 혼인생활의 경과나 이혼 경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 C이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부부 쌍방의 수입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와 C의 재산분할비율은 50:5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적절한 재산분할의 비율을 확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 피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가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졌으므로 C보다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이 사건 부동산 또한 피고의 급여 및 피고가 친정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C도 이에 대하여 수긍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점, ㉡ 이혼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2012.경부터 C과 별거하였고 C의 폭행도 이혼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대지와 그 지상 건물로서 이혼 당사자의 공유로 분할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고에 대한 부양적 성격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얻되 근저당권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재산분할합의에 따르면 C 또한 주거용 부동산과 지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의 실질적인 재산분할비율이 78:22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수영

판사정지원

판사황정현

별지

동일하고, 다만 항소심 법원은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지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포함하여 기재한다.